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設立 당시 任命하는 委員중 大法院長이 추천하는 常任委員 1人和 國會議長 및 大法院長이 추천하는 非常任委員 각 1人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期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인권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질서유지에 중점을 둔 나머지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과거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경험하였음.

나. 이제 질서와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함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될 시기에 이르렀고,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민간감시가 절실하다고 할 것임.

다. 또한 인권침해행위중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법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차별행위의 금지·구제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이 법안은 이러한 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구제를 규정하고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시·구제·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마. 이 법의 제정으로 국내적으로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진민주사회가 구현되고, 국제적으로는 인권선진국가로서의 국가적 이미지가 확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함.

3. 주요골자

가.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①인권교육 및 홍보 ②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 등의 개선 ③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의 실천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이 기본방침의 수행에 관한 책임을 국가에, 이를 감시·보완하는 책임을 국민인권위원회에 부과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함(안 제4조).

라. 법무부·외교통상부·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

특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등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성별·종교·연령·장애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재화·용역·교통수단 및 상업시설 등의 공급 또는 이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인을 우대·배제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되, 「인종모욕」과 「성희롱」을 차별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바. 국민인권위원회의 설립·업무·조직 및 운영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을 조사·구제하고 기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인권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조).

(2)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3) 위원회는 ①인권교육 및 홍보 ② 인권에 관한 법령 및 법령안, 제도·정책 및 관행의 연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③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구급·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⑤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⑥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6조).

(4)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며,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제2항).

(5)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활동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0조).

(6)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인과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

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그 임기는 3연으로 하며, 위원중 3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4조).

(7) 위원회의 업무중 일부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22조).

(8) 사무처는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9조).

(9)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7조).

(10) 위원회의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9조).

사. 국민인권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위원회는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불법 체포·감금 등 8개 항목의 행위), 수사기관 등이 아닌 정부기관의 인권침해행위(폭행·협박·가혹행위·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및 차별행위 전반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0조).

(2)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진술서 제출 요구권, 출석요구권, 감정의뢰권, 관계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실지조사권을 규정함(안 제47조).

(3) 진정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①긴급구제조치 권고 ② 조정 ③법률구조 ④구제조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⑤고발 및 수사의뢰 ⑥관계 법령·제도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⑦관계기관에의 이송 ⑧진정의 각하 ⑨진정의 기각 등을 규정함(안 제44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9조).

(4) 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처리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위원회로부터 권고·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국가기관·단체의 장 등은 그 권고·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원회의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64조).

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1) 인권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방해, 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 위원회에 대한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인권위원 등 자격사칭, 비밀누설, 뇌물수수, 직권람용, 정치관여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68조 내지 제74조).

(2) 위원회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위원회에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은 1999년도 예비비에서 충당함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 및 예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998. 10. 1 ~ 10. 2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없음

- 규제신설 : 4건

인권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천함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국가는 이 기본방침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
3.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4. 기타 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필요한 조치

②국민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시·보완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교정기관 등”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한다.
3.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라 함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교정기관 등·보호관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군검찰·헌병·기무부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
4.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급·보호시설”이라 함은 경찰서 유치장·교정기관 등·외국인보호소·군교도소(군구치소 및 헌병대의 영창을 포함한다) 및 다수인보호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기관의 인권보장 의무와 역할

제5조(국가기관의 의무) 모든 국가기관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 및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법무부의 역할)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옹호에 관한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
3.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
4.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②법무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고발 및 수사의뢰와 이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역할)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활동에의 참가, 재외국민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통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인권신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고용의 촉진과 근로조건향상의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분야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방하고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여성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 차별행위의 금지

제8조(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출산 또는 임신을 포함한다),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가족의 상황, 정치적 견해에 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9조(인종모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 또는 증오심을 표명하거나 경멸 또는 조롱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기한 차별행위로 본다.

제10조(성희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성희롱은 성별에 기한 차별행위로 본다.

제4장 국민인권위원회

제1절 설립 및 업무

제11조(설립) ① 차별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고 기타 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2조(독립성)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소) ①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사무처에 관한 사항
8. 인권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칙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기)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의 지원
6.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7.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인권에 관한 연구와 자문
8.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10.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11.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2.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17조(구금·보호시설의 시찰) ①위원회는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원으로 하여금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찰하는 인권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찰하는 인권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보호시설을 시찰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시설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권고 등의 상대방 및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 ①제16조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은 관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연례보고서 등) 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조직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이를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국회의장·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인과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회의장·대법원장 및 법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법조계·여성계·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중 각 1인이상은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대법원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임위원 각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 제28조제2항 단서, 제29조제4항, 제40조제3호 단서,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결

3.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은 그의 이익과 위원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7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진정인·피진정인 및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진정의 피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을 제외한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민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위원과 직원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국가의 지원 등

제3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출연금의 교부) ①국가는 위원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산의 기부) ①법인·단체 및 개인은 위원회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받은 재산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와 구제의 절차

제4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사기관 등의 직원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직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 또는 수색하는 행위

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마.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징계 또는 징벌하는 행위

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고문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수사기관 등의 직원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3.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닌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4.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

제41조(진정인의 적격)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42조(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진정인의 성명 기타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43조(구금·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권 보장) ①구금·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어 있는 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그 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서의 작성을 허용한 직원은 그 진정서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접수증명서를 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진정의 각하) ①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5.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8.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사, 재판,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감사원의 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 조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한 경우 그 진정인은 그 각하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에 다시 진정할 수 있다.

제45조(조사의 개시) ①위원회는 진정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6조(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단체 등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이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받는 기관·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 당해 위원이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조사의 한계와 사실조치) ①위원회가 제4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사·재판·형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진행중인 범죄수사 또는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진정의 이송) ①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송받은 진정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의 중지) 위원회는 진정의 당사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1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피진정인의 당해 직무로부터의 배제

3. 기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구제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합의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3조(조정절차의 개시) ①위원회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진정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피해자와 피진정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조정) ①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절차의 개시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진정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이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동일 또는 유사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④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피해자 및 피진정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조정의 효력)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위원회는 피해자나 피진정인이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구제수단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56조(법률구조) ①위원회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57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54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8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권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퇴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조사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3조(권고 등의 공표)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수사의퇴를 한 경우에는 그 고발 또는 수사의퇴의 대상인 혐의사실을 제외하고 당사자·죄명·수사기관명·고발 또는 수사의퇴 일자만을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등을 공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의 성명을 익명으로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4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①위원회로부터 제16조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고발 또는 수사의퇴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권고·고발 또는 수사의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제16조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제51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이 그 조치결과 등을 통보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5조(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제16조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퇴를 한 경우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조사의 경우 준용규정) 제46조 내지 제57조,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조사·처리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68조(인권옹호업무방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69조(허위진정)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진정서 작성 등 방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자

제71조(인권위원 등 자격사칭)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비밀누설)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연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3조(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3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정치관여금지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월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위원회의 설립동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위원회의 설립동기를 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무를 인계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설립 당시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과 국회의장·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각 1인 및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비상임위원 1인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2연인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장에 그 임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法律 第 號

人權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를 방지·救濟하고 人權意識을 高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方針) ①이 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意識의 鼓吹를 위한 敎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 및 慣行의 개선
3. 人權侵害에 대한 신속한 調査와 救濟
4.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필요한 措置

②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하여 國家機關의 活動을 監視·補完한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자유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 등”이라 함은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을 말한다.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라 함은 檢察·警察·國家情報院·矯正機關 등·保護觀察所 및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에서 規定한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행하는 者, 軍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을 말한다.
4.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보호·收容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5.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矯正機關 등·外國人保護所·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및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第4條(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2章 國家機關의 人權保障 義務와 役割

第5條(國家機關의 義務) 모든 國家機關은 法令의 制定과 改正 및 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執行過程에서 개인의 人權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法務部의 役割)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政府의 綜合計劃 수립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各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지원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②法務部長官은 매년 6月 30日까지 國民人權委員會의 권고·告發 및 搜查依賴와 이에 대한 國家機關 등의 措置結果 등을 綜合하여 人權狀況을 分析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關係中央行政機關 등의 役割) ①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에의 참가,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 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教育部長官은 初·中等教育법에 의한 各級 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障礙人·老人·兒童 등 社會的 弱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雇傭의 촉진과 勤勞條件의 향상을 통하여 勤勞者의 人權을 伸張하도록 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차별행위를 豫防하고 개선하는 活動을 통하여 女性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기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3章 차별행위의 금지

第8條(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出產 또는 妊娠을 포함한 다), 宗教, 年齡, 障礙, 社會的 身分, 人種, 皮膚色, 出身國家, 出身民族, 出身地域, 出身學校, 容貌 등 身體的 조건,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에 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優待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모집, 採用, 敎育, 配置, 昇進, 賃金 및 賃金외의 金品 지급,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3. 敎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第9條(人種侮辱)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 또는 敎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10條(性戲弄) 男女差別禁止 및 救濟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에 規定한 性戲弄은 性別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4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1條(設立) ① 차별행위를 포함한 人權侵害를 調查·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관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12條(獨立性) ①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②委員會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3條(事務所) ①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4條(定款) ①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處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在籍 人權委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야 한다.

第15條(登記) ①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6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에 관한 敎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立法過程중에 있는 法令案을 포함한다)·制度·政策·慣行의 研究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3. 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에 대한 調査와 救濟
4. 차별행위에 대한 調査와 救濟
5.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의 지원
6.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및 그 條約의 이행에 관한 研究와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7.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8.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9.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査
10. 人權侵害의 類型·判斷基準 및 그 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11.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12.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協力
13. 第1號 내지 第12號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第17條(拘禁·保護施設의 視察) ①委員會는 人權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6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를 同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禁·保護施設을 視察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表明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施設의 長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18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①委員會는 第16條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協조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第19條(권고 등의 相對方 및 권고에 대한 尊重義務) ①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은 관계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20條(年例報告書 등) ①委員會는 매년 3月 31日까지 委員會의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大統領과 國會에 보고하고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例報告書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特別報告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組織 및 운영

第21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人權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의 委員은 이를 常任으로 한

다.

②委員은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이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委員중 3人은 國會議長이 推薦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중 3人 이상은 女性으로 任命한다.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이 委員을 推薦함에 있어서는 各 女性이 포함되도록 하고, 各 常任委員 1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⑦委員長 및 委員이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第22條(小委員會)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변경, 豫算 및 決算, 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産의 취득·처분 및 변경 등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第17條第3項, 第28條第2項 但書, 第29條第4項, 第40條第3號 但書, 第44條第1項 第1號 但書 및 第6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23條(委員長の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그 會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委員長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는 常任委員은 그의 이익과 委員會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委員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常任委員이 委員會를 代表한다.

第2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5條(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②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26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刑의 宣告, 懲戒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27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小委員會의 會議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지명하는 者가 會議를 主宰한다.

第28條(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陳情의 當事者(陳情人·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당해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長은 當事者의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決定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29條(事務處의 設置)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命한다.

⑤事務總長은 委員長의 명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소속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0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성, 權限, 審議節次, 懲戒의 종류 및 효력 기타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1條(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退職·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32條(資格詐稱의 금지)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秘密漏泄의 금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業務處理중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유사명칭사용의 금지)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5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6條(委員會의 組織·운영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組織·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國家의 지원 등

第37條(公務員 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派遣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協議하여 그 소속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派遣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出捐金の 교부) ①國家는 委員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

費를 증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매년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の 요구·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財産의 寄附) ①法人·團體 및 개인은 委員會의 施設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받은 財産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第5章 調査와 救濟의 節次

第40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행위(이하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搜查機關 등의 職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職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행위

다.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の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라.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누설하는 행위

마.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바. 사람에게 대하여 暴行·脅迫·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 사람을 公然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2. 搜查機關 등의 職員과 共犯관계에 있는 者가 그 職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 各目の 1에 해당하는 행위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 아닌 政府機關의 公務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第1

號바目に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公務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바目に 해당하는 행위. 다만, 委員會가 在籍委員 3分の 2이 상의 贊成으로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4.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차별행위

第41條(陳情人의 適格)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행위에 관련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2條(陳情의 方式)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취지와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

第43條(拘禁·保護施設 收容者 등의 陳情權 보장) ①拘禁·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보호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拘禁·保護施設의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書의 작성을 허용한 職員은 그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を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4條(陳情의 却下) ①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당해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련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취하한 경우
7. 陳情의 취지가 당해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반하는 경우
8. 陳情의 原因이 된 사실과 동일한 事案에 관련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査나 國政調査,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査院의 監査,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 調査, 女性特別委員會의 男女差別事項 調査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9. 委員會가 棄却한 陳情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陳情한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調査를 開始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5條(調査의 開始) ①委員會는 陳情이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6條(調査의 目的) ①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機能遂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目的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7條(調査의 方法) ①委員會는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제출요구

2.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聽取

3.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의뢰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團體 등에 대한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②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이나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하여 實地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陳述를 聽取하게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地調査를 받는 機關·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

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을 領置할 수 있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당해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8條(調查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47條第1項第4號, 同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물건 또는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다.

1. 公開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물건으로서 公開하면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진행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중인 裁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事件關係人の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9條(陳情의 移送) ①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機關은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移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0條(調查의 中止)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の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의 사유로 調查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調查를 중지할 수 있다.

第51條(緊急救濟措置의 권고)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를 放置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52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었다는 蓋然性이 인정될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第53條(調停節次의 開始) ①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陳情을 調停에 회부할 수 있다.

②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調停) ①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동일 또는 유사한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재발방지를 위한 措置

3. 原狀回復·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송달된 날부터 2週日이내에 異

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5條(調停의 효력) ①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第56條(法律救助) ①委員會는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를 위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 기타 機關에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救濟措置 등의 권고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고 救濟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4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하는 過程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 및 慣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58條(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9條(告發 및 搜查依頼)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의뢰할 수 있다.

第60條(意見陳述機會의 부여) ①委員會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권고,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인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61條(決定의 통지) 委員會는 第4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濟措置의 권고,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要請,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意見表明,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2條(調査 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3條(권고 등의 公表) ① 委員會는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그 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罪名·搜查機關名·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 등을 公表하는 경우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개인의 姓名을 匿名으로 하는 등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4條(措置結果 등의 通報) ① 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7條第1項·第2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권고,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소속 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권고·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1條第1項,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通報함에 있어서 委員會의 권고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65條(法務部長官에 대한 통보) 委員會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변경,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法務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66條(職權調査의 경우 準用規定) 第46條 내지 第57條, 第59條 내지 第65條의 規定은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調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7條(調査·處理節次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調査 및 處理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罰 則

第68條(人權擁護業務妨害)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하는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을 暴行 또는 脅迫한 者
2.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그 業務상의 행위를 強要 또는 沮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
3. 僞計로써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業務遂行을 방해한 者

第69條(虛僞陳情) 허위의 사실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0條(陳情書 작성 등 방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한 者
2.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를 委員會에 송부하지 아니한 者

第71條(人權委員 등 資格詐稱)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2條(秘密漏泄)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處理중 知得한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73條(賂物罪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4條(政治關與禁止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

員法 第65條 및 第84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5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正當한 理由없이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正當한 理由없이 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正當한 理由없이 第47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4. 正當한 理由없이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 ②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大統領은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6月이내에 法務部長官의 추천으로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 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設立 당시 任命하는 委員중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常任委員 1人과 國會議長 및 大法院 長이 推薦하는 非常任委員 各 1人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기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기를 명시하여야 한다.